**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하 “데이터제공자”라 한다)가 □□□(이하 “데이터이용자”라 한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여 그 이용을 허락하고,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상데이터”는 본 계약에 따라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로서, [별지1]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각각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데이터의 이용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데이터제공자”란 본 계약을 통하여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데이터이용자”란 본 계약을 통하여 데이터제공자로부터 대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이행 및 준수)**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 및 이행에 있어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_\_\_\_\_까지([ ]개월)로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만료 [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 의사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 ]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대상데이터의 범위)**

①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상데이터의 범위는 [별지1]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② 데이터제공자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대상데이터를 갱신(업데이트)･검증･보충(이하 “갱신”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갱신된 데이터의 제공 여부, 제공방법, 제공시기, 이용대가 등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그 합의사항은 [별지1]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다.

**제6조(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① 데이터제공자가 데이터이용자에게 대상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은 [별지2]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제1항의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기로 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대상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데이터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② 본 조의 이용허락에도 불구하고 대상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제공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데이터이용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③ 본 조의 이용허락은 데이터제공자의 대상데이터 이용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본 조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8조(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① 데이터이용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상데이터를 제1항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가공, 분석, 편집, 통합, 기타의 이용을 할 수 없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데이터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대상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대가지급)**

① 대상데이터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은 다음 중 적절한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  |
| --- | --- | --- |
|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 **지급기한** |
| ▢ 일시금 지급 | 제1항의 이용대가 전액 | \_\_\_\_\_\_\_\_\_\_\_\_\_\_\_\_\_\_ |
| ▢ 분할금 지급 | 1차: \_\_\_\_\_\_\_\_\_\_\_\_\_\_원 | 1차: \_\_\_\_\_\_\_\_\_\_\_\_\_\_\_ |
| 2차: \_\_\_\_\_\_\_\_\_\_\_\_\_\_원 | 2차: \_\_\_\_\_\_\_\_\_\_\_\_\_\_\_ |
| 3차: \_\_\_\_\_\_\_\_\_\_\_\_\_\_원 | 3차: \_\_\_\_\_\_\_\_\_\_\_\_\_\_\_ |
| ▢ 정기금 지급 | \_\_\_\_\_\_\_\_\_\_\_\_\_\_원 | ▢ [ ]월  ▢ [ ]년 |
| ▢ 기타 방법 |  |  |
| (☞ 해당되는 부분에 ■ 표시) | | |

② 데이터이용자는 제1항의 대가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 ]월/[ ]년 말일까지 데이터제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데이터이용자의 대상데이터 이용가능기간이 [ ]월/[ ]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 대가는 이용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

③ 데이터이용자가 제1항의 대가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 ]%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파생데이터 등)**

① 데이터이용자가 대상데이터의 활용(연계, 가공,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을 통하여 생성한 데이터(이하 “파생데이터”라 한다)를 이용할 권리의 귀속과 그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3]에 따른다.

②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이용범위를 넘어서 파생데이터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상데이터에 대한 보증 등)**

① 데이터제공자는 대상데이터가 적법하게 생성되고 취득되었으며,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이용허락을 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대상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대상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④ 데이터제공자는 대상데이터의 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을 보증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품질보증의 대상, 범위, 기준(정량적 수치, 정성적 기준 등) 등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대상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데이터이용자의 이용에 제한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제3자로부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데이터이용자가 대상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데이터의 관리의무 등)**

① 데이터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명확히 구별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데이터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대상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대상데이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데이터이용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거나 대상데이터의 관리･보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제공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상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현황 보고 등)**

①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의 대상데이터 이용이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용현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데이터이용자의 보고가 대상데이터의 이용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제공자의 직접 검증과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3자에 의한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제공자가 직접 검증하는 경우 데이터이용자의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증 비용은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데이터이용자의 대상데이터 이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대상데이터의 이용 중지와 그 위반 이용에 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상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① 데이터이용자는 대상데이터의 유출･분실･도난 또는 훼손 등(이하 “데이터 유출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상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외에도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유출의 범위를 확인하고 원인 및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데이터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대상데이터 유출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일간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최고 없이 즉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은 제외)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산, 화의, 정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그러한 신청을 한 경우

5.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하는 경우

6. 데이터이용자가 타사와 합병, 인수되는 경우

7.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각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① 각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대상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리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보증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제한 등)**

① 데이터이용자는 대상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데이터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제공자는 제1항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데이터이용자에 대한 모든 청구,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제공자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③ 제1항의 분쟁으로 인하여 데이터제공자가 일체의 청구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데이터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 손실,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불가항력)**

① 각 당사자는 지진, 태풍, 홍수, 수해, 대규모 화재 등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전쟁, 기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종료 후 조치)**

① 데이터이용자는 본 계약 종료 후 대상데이터 및 파생데이터 중 데이터제공자가 단독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데이터(이하 “반환데이터”라 한다)의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 ]일 이내에 [별지4]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데이터 중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중단, 반환, 폐기, 계속 이용 등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② 데이터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데이터를 폐기한 경우 그 폐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 폐기 확인서 등)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이용자는 본인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 내에 반환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한 링크 또는 접속정보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이용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데이터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제3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반환데이터의 이용중단, 반환, 폐기(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데이터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 접속링크나 접속정보 제거 등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밀정보임을 표명 또는 표시한 후 서류,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상대방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행정청의 처분, 명령 또는 관련 법령의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비밀정보 공개 시점에 이미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공개 시점에 알려진 정보

4. 비밀정보 공개 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5.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된 정보

④ 공개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 또는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효력유지조항)**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종료한 경우이더라도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 ]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22조(완전합의)**

①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를 대체하며, 기존의 모든 합의 및 의사표시는 본 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일부 무효)**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24조(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통지)**

본 계약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준거법)**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

**제28조(특약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데이터제공자:**

상호:

주소:

대표자: (인)

**데이터이용자:**

상호:

주소:

대표자: (인)

첨부: 별지

**[별지1] 대상데이터**

1. 대상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  |  |  |  |
| --- | --- | --- | --- |
| **구분** | **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데이터이용자의 이용범위** |
| 1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
| 2 | ○○○ |  |  |

2. 대상데이터의 갱신(업데이트) 포함여부에 관한 사항

|  |  |
| --- | --- |
| **갱신(업데이트) 제공 포함 여부** | 포함( ), 불포함( ) |
| **갱신(업데이트) 제공주기** |  |
| **갱신(업데이트) 제공방법** |  |
| **갱신(업데이트) 비용**(단위: 원) |  |

**[별지2] 대상데이터의 제공방법**

|  |  |  |  |  |
| --- | --- | --- | --- | --- |
| **구분** | **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제공방법** | **파일형식** |
| 1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전자우편, 저장장치 전달, API 연동, 시스템･서비스 접속 방식으로 전달 등 데이터 제공방법】 | 【TXT, JSON, CSV, XLSX 등 데이터 제공 파일 형식】 |
| 2 | ○○○ |  |  |  |

**[별지3] 파생데이터 및 그 이용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  **데이터**  **이름** | **파생**  **데이터 이름** | **파생데이터**  **항목 등** | **생성**  **기간** | **파생데이터 이용권리**  **귀속** | **데이터**  **제공자의 이용범위** | **데이터**  **이용자의 이용범위** |
| 1 | ○○○ | ○○○ | 【데이터 건수, 용량, 파일형식 (확장자), 데이터 상세설명 등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년○월○일~○년○월○일】의 기간에 생성된 것 | 데이터제공자  ( )  데이터이용자  ( )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 ( ) |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 【이용목적】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가공 등의 가부】 |
| 2 | ○○○ |  |  |  |  |  |  |

\* 우선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누구[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 모두]에게 귀속되는지 표시, 다음으로 [데이터제공자 또는 데이터이용자]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인 [데이터이용자 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파생데이터를 이용허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 파생데이터가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경우 [데이터제공자 및 데이터이용자]가 파생데이터를 이용할 권리의 내용을 기재함

**[별지4] 계약종료 시에 반환, 폐기 또는 삭제되는 데이터**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데이터/파생데이터 이름** | **데이터 항목 등** | **생성기간** |
| 1 | ○○○ | ○○  【별지 1 또는 3을 인용하여 특정】 | 【○년○월○일~○년○월 ○일】의 기간에 생성된 것 |
| 2 | ○○○ |  |  |

\* 파생데이터에는 생성기간을 기재함